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88
----------	-------

발의연월일 : 2026. 5. 15.

발 의 자 : 서천호 · 정성국 · 김은혜  
박충권 · 강명구 · 김승수  
박덕흠 · 김선교 · 김장겸  
이만희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선의 설비·검사·증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에 대해서는 해당 국제협약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공해에서 조업하는 어선과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이하 “케이프타운 협정”이라 한다)을 채택하였고, 해당 협정은 2027년 2월 24일 발효 예정임.

케이프타운 협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어선에 대하여 선체 구조, 기관, 구명설비, 무선설비, 비상훈련 등 안전기준과 국제협약검사, 국제어선안전증서 및 항만국통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협정 이행에 필요한 검사, 증서의 발급, 항만국통제 및 특별점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협정 발효에 앞서 국내

이행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른 무선설비 설치, 국제협약검사, 국제어선안전증서 및 국제어선면제증서의 발급·비치, 항만국통제, 특별점검 및 관련 제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정의 국내 이행 기반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원양어선과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제총톤수 95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활동에 사용되는 어선에 대하여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도록 함(안 제5조).
- 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활동에 사용되는 어선에 대하여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받도록 하고, 국제협약검사의 면제, 국제어선안전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의2 신설).
- 다.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검사 후 선체·기관·설비 등의 상태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국제어선안전증서 및 국제어선면제증서의 발급, 유효기간, 비치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3조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 라. 국내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 예정인 외국어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항만국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협약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마.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따라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민국 어선 또는 외국 항만에서의 출항정지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한민국 어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보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출항정지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바. 국제협약검사, 국제어선안전증서 및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명령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비하고, 국제협약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및 국제어선안전증서 또는 국제어선면제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53조).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에는 해당 국제협약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2.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총톤수(이하 “국제총톤수”라 한다)가 950톤 이상인 어선으로서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활동에 사용되는 어선: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이하 “케이프타운 협정”이라 한다)

제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이 국제협약의 규정보다 강화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국제협약검사)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활동에 사용되는 어선은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국제협약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협약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약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 기록을 기재한 국제어선안전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발급한 국제어선안전증서의 소유자가 케이프타운 협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증서를 회수하거나 효력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정부로부터 국제어선안전증서의 발급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외국어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한 후 국제어선안전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의 종류, 국제어선안전증서의 발급·회수·효력정지·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을 “검사,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

사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국제  
어선안전증서

5의4.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협약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  
제한 경우에는 국제어선면제증서

제28조제1항 중 “어선검사증서의”를 “어선검사증서 및 국제어선안전증  
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선검사증서의”를  
“어선검사증서 및 국제어선안전증서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어  
선검사증서의”를 “어선검사증서 또는 국제어선안전증서의”로 하고, 같  
은 항 제2호 중 “정기검사를”을 “정기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로,  
“어선검사증서를”을 “어선검사증서 또는 국제어선안전증서를”로 한다.

제29조 본문 중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  
증서”를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임시항행검사증서·국제어  
선안전증서 또는 국제어선면제증서”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2조·제24조”를 “제22조·제22조의2·제24조”로  
한다.

제8장을 제9장으로 한다.

제9장을 제10장으로 한다.

제8장(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장 항만국통제

- 제36조의2(항만국통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어선의 구조·설비·어획물 또는 화물의 운송방법 및 어선원의 어선운항지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예정인 외국어선에 직접 승선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어선의 항해가 부당하게 지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의 결과 외국어선의 구조·설비·어획물 또는 화물의 운송방법 및 어선원의 어선운항지식 등이 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어선에 대하여 수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 결과 어선의 구조·설비·어획물 또는 화물의 운송방법 및 어선원의 어선운항지식 등과 관련된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 어선 및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⑤ 외국어선의 소유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의 위법·부당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외국어선에 대한 조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3(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① 어선의 소유자는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어선의 결함이 지적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되는 국제협약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민국 어선이 국내에 입항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어선의 구조·설비 등에 대하여 점검(이하 “특별점검”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어선에 대하여 외국항만에서의 출항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어선의 구조·설비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점검의 결과 어선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보완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6조의4(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어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선의 어선명·총톤수 및 출항정지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36조의5(국제협약검사 등의 수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어선원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22조의2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및 제36조의3에 따른 특별점검
2. 제36조의2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
3.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5조제2항에 따

른 어선 또는 사업장의 출입·조사에 관한 업무

4. 제41조의3에 따른 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직접 수행에 관한 업무

제37조제2항 전단 중 “제66조, 제69조 및”을 “제66조 및”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협약검사를 신청하는 자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6조의2에 따른 항만국통제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어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3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공료 등 필요한 설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2조의2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4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국제협약검사를 대행할 때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이를 수행하거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

게 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제4호 중 “어선검사를”을 “어선검사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중 “어선검사증서에”를 “어선검사증서 또는 제2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국제어선안전증서에”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별도건조검사증서·건조확인증”을 “별도건조검사증서·국제어선안전증서·건조확인증”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벌칙)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제2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제7호의3 및 제7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및 제2항의”를 “,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2항제7호의3·제7호의4·제8호 및 제2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로 한다.

7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8의2. 제29조를 위반하여 국제어선안전증서 또는 국제어선면제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1. 제1항제5호, 제2항제7호의2·제8호의2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협약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제협약검사의 대상이 되는 어선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날까지 국제협약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검사(이하 “국제협약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협약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협약 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 기록을 기재한 국제어선안전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발급한 국제어선안전증서의 소유자가 케이프타운 협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증서를 회수하거나 효력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 장관은 외국정부로부터 국제어선안전증서의 발급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외국어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한 후 국제어선안전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체·기관·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증서를 발급한다.

1. ~ 5의2. (생략)

<신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의 종류, 국제어선안전증서의 발급·회수·효력정지·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① -----  
-----검사,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① -----  
-----  
-----  
-----.

1. ~ 5의2. (현행과 같음)

5의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에 합격된 경우

<신 설>

6. ~ 8. (생략)

② (생략)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  
년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  
검사를 받은 경우 등 부득이

에는 국제어선안전증서

5의4.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협약검사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국제어  
선면제증서

6.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  
어선검사증서 및 국제어선안전  
증서의-----  
--.

② (현행과 같음)

③ -----어선검사증서  
및 국제어선안전증서의-----  
-----  
-----  
-----  
-----  
-----  
-----.

1. 어선검사증서 또는 국제어선  
안전증서의-----  
-----  
-----  
-----

2. -----정기  
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제25조에 따른 총톤수 측정·재측정, 검사·검정 및 확인(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검사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신설>

제24조

② (현행과 같음)

제8장 항만국통제

제36조의2(항만국통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어선의 구조·설비·어획물 또는 화물의 운송방법 및 어선원의 어선운항 지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예정인 외국어선에 직접 승

선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어선의 항해가  
부당하게 지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의 결과 외국  
어선의 구조·설비·어획물 또  
는 화물의 운송방법 및 어선원  
의 어선운항지식 등이 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의 기준에 미달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어선에 대하여 수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  
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 결과 어선의  
구조·설비·어획물 또는 화물  
의 운송방법 및 어선원의 어선  
운항지식 등과 관련된 결함으  
로 인하여 해당 어선 및 승선  
자에게 현저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는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외국어선의 소유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을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사유  
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  
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정  
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의  
위법·부당 여부를 직접 조사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  
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  
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  
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  
지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  
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이  
의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  
18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⑧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  
른 외국어선에 대한 조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신 설>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3(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① 어선의 소유자는 외국 항만 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어선의 결함이 지적되지 아니 하도록 관련되는 국제협약 규 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 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민 국 어선이 국내에 입항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어선의 구조· 설비 등에 대하여 점검(이하 “특별점검”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서 확인 을 요청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어선에 대하여 외국항만에서의 출항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 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어선의 구 조·설비 등에 대하여 특별점

<신 설>

<신 설>

검을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점검의 결과 어선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보완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6조의4(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어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선의 어선명·총톤수 및 출항정지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36조의5(국제협약검사 등의 수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어선원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22조의2에 따른 국제협약







단 및 선급법인이 제41조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국제협약검사를 대행할 때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이를 수행하거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장 벌칙

제44조(벌칙)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어선검사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4의2. ~ 7. (현행과 같음)

7의2. -----  
-어선검사증서 또는 제2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국제어선안전증서에-----

제9장 벌칙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21조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4의2. ~ 7. (생략)

7의2.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만재 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을 위반한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

에 사용한 자

-----  
-----  
-----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임시항행검사증서·건조검사증서·예비검사증서·별도건조검사증서·건조확인증·제조확인증·정비확인증 또는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8. -----  
-----  
-----  
-----별도건조  
검사증서·국제어선안전증서  
·건조확인증-----  
-----

9.·10. (생략)

9.·10.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44조의2(벌칙)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과태료) ① (생략)

제5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설>

7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의2. · 7의3. (생략)

8. (생략)

<신설>

9. ~ 11.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신설>

1.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2. (생략)

7의3. · 7의4. (현행 제7호의2 및 제7호의3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8의2. 제29조를 위반하여 국제어선안전증서 또는 국제어선면제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9. ~ 11. (현행과 같음)

③ -----  
-----  
-----  
-----.

1. 제1항제5호, 제2항제7호의2 · 제8호의2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2. -----,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2항제7호의3 · 제7호의4 · 제8호 및 제2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

3. (현행 제2호와 같음)